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신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유한회사인 피고의 사원이자 이사인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2. 30. 사원총회를 열어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라 한다)를 한 것이 원고들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그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협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불안과 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사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가 무효이고 그와 같은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